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73

발의연월일: 2024. 12. 13.

발 의 자:정진욱・김문수・박용갑

민형배 • 박희승 • 조인철

황명선 • 이개호 • 문금주

양부남 • 이언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송전 ·변전·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석탄·LNG와 같은 화석 연료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 제13조(사업) ① |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 |
|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2의2. 「에너지법」 제2조제1호 |
| | 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조 |
| |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
| | 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 |
| | 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
| | <u>령으로 정하는 사업</u>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